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9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28.

발 의 자 : 윤준병·이수진(비)·위성곤
오기형·박 정·홍성국
이용빈·장경태·황운하
이해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‘한국판 뉴딜’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·발표하였음.

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.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, 그린 뉴딜,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러한 한국판 뉴딜 사업(그린 뉴딜 등)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임(안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(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, 법률 제8138호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9901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1603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3550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률 제934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폐지법률(법률 제9901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1603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3550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

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03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3550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단서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1603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3550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1조 단서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④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(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1603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, 법률 제13550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096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
2월 31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21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(유효기간) ----- <u>2025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